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정관

제정	1998.	11.	19
개정	1999.	1.	5
개정	1999.	6.	4
개정	2000.	6.	27
개정	2004.	2.	19
개정	2007.	6.	21
개정	2010.	11.	29
개정	2019.	3.	27
전부개정	2019.	11.	4
개정	2020.	6.	23
개정	2020.	8.	13
개정	2020.	10.	14
개정	2020.	11.	19
개정	2020.	12.	24
개정	2021.	6.	1
개정	2022.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꽃박람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하여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고양시를 국제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재단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약호 GIFF)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산동구 호수로 595에 두고 필요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꽃박람회의 조직·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3.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4. 꽃박람회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6.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7.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 1.>

제6조(대행사업) ①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변경·지정·고시 신청 사항 등 중요사항은 필요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고양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6.23.>

-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 ③이사장 궐위 시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0.6.23.>

- ②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면) ①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표이사
 2. 고양시 주무부서 실·국·소의 장
- ③감사 2인 중 1인은 시 주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④임원 중 대표이사, 선임직 임원은 공개채용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

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한다. 단,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등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3조(임기만료 대표이사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의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요구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제16조(직원의 임면) ①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당연직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정원은 대표이사 포함 22명이며, 하부조직은 4개팀 이하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7.>

②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고양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업무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제3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사는 제28조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위 원 회

제32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 행사운영, 전시 및 기타 의견수렴 등의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3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④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결산) ①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손익금의 처리) ①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고양시에 귀속된다.

제4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용된 임명직 직원에 대한 임기 및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명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기존 임기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개정 2020.12.24.>

기 본 재 산

현 금 : 100,000,000원